



 금융위원회	보도 자료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2017. 7.31 14시	배포	2017. 7. 31(월)
책 임 자	금융위 서민금융과장 하 주 식(02-2100-2610)	담 당 자	서 나 윤 사무관 (02-2100-2611) 전 동 연 사무관 (02-2100-2614)	

제목 : 포용적 금융의 첫걸음,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을 응원합니다

- 금융위원장,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 -

-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소각 추진
 - '17.8월말까지 국민행복기금 5.6조원(73.1만명) 및 금융공공기관 16.1조원(50만명) 등 총 21.7조원(123.1만명)의 채권 소각 추진
- 민간 금융회사들도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연내 소각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
 - '16년말 기준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약 4.0조원(91.2만명) 규모로 추정(대부업 제외)

1 간담회 개요

-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'17.7.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,
 -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·확정하였음

< 간담회 개최 개요 >

- ◆ 일시 및 장소 : 2017년 7월 31일(월) 14:00 / 서민금융진흥원
- ◆ 참석자 : 금융위원회 위원장(주재), 중소서민금융정책관, 금융감독원 부원장, 서민금융진흥원장,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, 주택금융공사 사장, 예금보험공사 사장, 신보 이사장, 기보 이사장, 신용정보원장, 은행연합회장, 생보협회장, 손보협회장, 여신협회장, 저축은행중앙회장, 신탁중앙회장,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등
- ◆ 주요 논의사항 :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

2 주요 논의내용

가.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
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,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“포용적 금융”은,
 -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하여 “생산적 금융”과 ‘지속 가능한 경제성장’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,
 - 우리 금융시스템이 양극화 해소,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
- 위원장은 우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“소각”을 통하여,
 -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재기를 돕고,
 - 나아가,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·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
 -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 및 시효연장 관행 개선 등을 당부
- 이외에도 향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, 최고금리 인하 및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,
 - 각 금융업권과 금융공공기관들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음

나. 공공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현황 및 처리계획

- **(처리 대상)** '17.5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보유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소각 가능한 채권은 총 21.7조원(123.1만명)
 -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완성채권 0.9조원(39.9만명), 파산면책채권 4.6조원(32.7만명) 등 총 5.6조원(73.1만명) 소각
 -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완성채권 12.2조원(23.7만명), 파산면책채권 3.5조원(22.5만명) 등 총 16.1조원(50.0만명) 소각
- **(처리 방안)**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을 소각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('17.8월말까지 조치 완료 예정)
 - 채권의 소각은 기관별로 (a) 내규정비 → (b) (미상각채권)상각 → (c) 채권포기 의사결정(이사회 등) → (d) 전산 삭제 및 서류 폐기의 절차로 이루어지며,
 - '17.9.1일부터 채무자는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 여부를 해당 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(참고)을 통해 확인 가능

- **(소각의 효과)** ①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*하여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, ②채무부존재 증명(완제증명서) 등을 통해 금융거래 관련 불편 해소

* 채권을 '소각'하는 경우,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채무가 부활하지 않음

다. 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향

- **(채권 규모)** 민간부문(대부업 제외)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'16년말 기준 약 4.0조원(91.2만명)*으로 추정** (금감원)

* 은행 9,281억원(18.3만명), 보험 4,234억원(7.4만명), 여전 13,713억원(40.7만명), 저축은행 1,906억원(5.6만명), 상호금융 2,047억원(2.2만명) 등

** KB·신한·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소각을 실시 중이며, 실제 소각대상 채권의 규모는 시행 시기, 서류 확인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**(처리 방향)** 민간 부문은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,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자율적인 소각 유도
 - 또한,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등을 운영하고, 채무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모범사례 공유

라.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

- 각 금융협회들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 취지에 공감하며,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발언
 - 각 업권별로 현재 처리 가능한 채권 규모를 파악 중이며, 올해 하반기 중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힘
 - 나아가, 소멸시효연장 기준,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등에 관한 자율적인 모범규준 등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

※ [용어 설명] "소멸시효완성채권"이란?

-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(상법 제64조)이나,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
- 소멸시효 완성시,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으나, ("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", 대법원 1979.2.13. 선고 78다2157판결)
-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등의 경우,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되어 채무 부활

<별첨 1>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

<별첨 2>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의 기대효과(사례) 및 Q&A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넉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신용정보조회 채권자변동정보

신용정보조회

신용정보조회

- 소비자신용보고서 >
- 신용도면단정보 >
- 공공정보 >
- 대출정보 >
- 현금서비스정보 >
- 신용개척/생김정보 >
- 채무보증정보 >
- 채권자변동정보 >
-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>
- 대출채권소각정보 >

대출채권소각정보

소각정보 조회
이용자 안내

■ 현재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대출채권 소각정보입니다.

- ▶ 제공 정보 :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소각정보
- ▶ 대상 금융공공기관 : 예금보험공사(케이알엔씨), 주택금융공사,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(6개 기관)

※ 대출채권 소각정보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아닌 각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며,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소각에 대한 기준, 상세내역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공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▶ 6개 금융공공기관에 대출채권 소각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

개인(신용)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

▶ 6개 금융공공기관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채권 소각정보를 제공하기위한 동의

개인(신용)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확인

대출채권 소각정보

기관명	홈페이지	전화번호	기관별 대출채권 소각정보		
			최초채권기관	대출원금 잔액	대출발생일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	nongshinbo.nonghyup.com	02-2080-6607	최초채권기관	대출원금 잔액	대출발생일
			해당 사항 없음		
기술보증기금	www.kibo.or.kr	1544-1120	최초채권기관	대위변제 금액	대위변제일
			해당 사항 없음		
한국자산관리공사	www.oncredit.or.kr	1588-3570	채권양도기관	대출원금 잔액	대출발생일
			A개피탈	7,000,000	2000.5.3.
			B저축은행	4,000,000	2003.5.10.
신용보증기금	www.kodit.co.kr	1588-6565	최초채권기관	대위변제 금액	대위변제일
			C은행	150,000,000	2008.5.12.
예금보험공사 (KR&C)	www.kdic.or.kr	1588-0037	최초채권기관	대출원금 잔액	대출발생일
			해당 사항 없음		
주택금융공사	www.hf.go.kr	1688-8114	최초채권기관	대위변제 금액	대위변제일
			D은행	30,000,000	2009.7.8.

■ '해당 사항 없음' 이란 각 기관에서 소각한 채권이 없다는 것입니다.

※ 대출채권 소각정보 조회시스템 예시화면으로 기관별 제공항목 및 정보, 디자인, 레이아웃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